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강력한 경제적 징벌효과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직무집행공무원 위해 행위 등에 관한 벌칙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2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안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3, 제17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7조”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 중 “제16조의3, 제17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7조의2”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 ----- ----- ----- <u>10억원</u> ----- -----.	제16조의2(벌칙) ----- ----- ----- ----- <u>15억원</u> ----- -----.
<u><신설></u>	제16조의3(벌칙) ① <u>제6조의2에 따른</u> <u>정선명령 또는 제2</u> <u>3조제1항에 따른</u> <u>조치에 대하여 거</u> <u>부·방해하거나 기</u> <u>피하는 과정에서</u> <u>직무를 집행하는</u> <u>공무원 등에게 흉</u> <u>기나 그 밖의 물건</u> <u>으로 위해를 가하</u> <u>거나 가하려는 행</u> <u>위를 한 자는 3년</u> <u>이하의 징역 또는</u> <u>3억원 이하의 벌금</u> <u>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죄를	<u><삭제></u>

	<u>범하여 공무원 등</u> <u>을 상해에 이르게</u> <u>한 때에는 3년 이</u> <u>상의 유기징역에</u> <u>처한다. 사망에 이</u> <u>르게 한 때에는 무</u> <u>기 또는 5년 이상</u> <u>의 징역에 처한다.</u>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벌칙) ----- ----- ----- <u>6억원</u> ----- ----- -.
<u><신 설></u>	1. 제6조의2를 위반 <u>하여 정선명령을</u> <u>따르지 아니한</u> <u>선박의 소유자</u> <u>또는 선장(제16조</u> <u>의3에 해당하는</u> <u>자는 제외한다)</u>	<u><삭 제></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 음)	2. ~ 5.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 <u>조의2를 위반하여</u> <u>정선명령을 따르지</u> <u>아니한 선박의 소</u>	<u><삭 제></u>	제17조의2(벌칙) 제6 <u>조의2를 위반하여</u> <u>정선명령을 따르지</u> <u>아니한 선박의 소</u>

[illegible]

용인, 그 밖의 종업원	-----	
이 그 법인 또는 개	-----	
인의 업무 또는 재산	-----	
에 관하여 제16조의2,	-----	
제17조, 제17조의2 또	---제16조의3, 제17조	
는 제18조부터 제20	-----	
조까지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위반행	-----	
위를 하면 그 행위자	-----	
를 벌하는 외에 그	-----	
법인 또는 개인에게	-----	
도 해당 조문의 벌금	-----	
형을 과(科)한다. 다	-----.	
만, 법인 또는 개인이	-----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	
기 위하여 해당 업무	-----	
에 관하여 상당한 주	-----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	
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00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윤준병 · 주철현 · 어기구
이병진 · 박민규 · 문대림
서미화 · 송옥주 · 권칠승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 · 승선 · 검색 · 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 · 광역화 · 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흥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강력한 경제적 징벌효과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직무집행공무원 위해 행위 등에 관한 벌칙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등)

법률 제 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 ----- ----- <u>15억원</u> -----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제17조(벌칙) ----- ----- <u>6억원</u>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 ----- ----- <u>3억원</u>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u> ----- ----- -----.